

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정보게시 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

장기요양기관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4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에 따라 수급자와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내용, 시설·인력 등 현황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<http://www.longtermcare.or.kr>)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

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같은 법 제69조(과태료)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, 특히 신설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체 없이 기관정보를 게시하시기 바랍니다.

【 게시 방법 】

신설기관·홈페이지 미가입 기관	정보 미게시·미변경 기관
① 홈페이지 가입 ② 급여종류별 정보 입력	① (미게시 항목) 해당 정보 반드시 입력 ② (미변경 항목) 수시 업데이트
▶ 정보게시는 급여종류별 입력이 원칙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가형, 나형을 구분하여 각각 입력, 주·야간보호의 경우에도 일반실과 주·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각각 입력 ▶ 현원 및 프로그램 정보에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수정 입력 ※ 현원은 3개월, 프로그램 정보는 6개월 마다 업데이트 ▶ 입소(이용) 정원이 '0명'인 경우 현재 입소(이용) 현원에 '0명'으로 입력해야 게시여부 반영 ▶ 기본정보(홈페이지 주소, 교통편, 주차시설)에 기재사항 없을 시 공란이 아닌 '없음'으로 입력 ※ @, &, / 등 특수문자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입력 금지 ▶ 기본정보 탭의 '이용계약에 관한 사항' 체크 시 반드시 공지사항 탭의 '계약에 관한 사항' 내용을 사전 입력 후 Y로 체크	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「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매뉴얼」 자료게시 경로
- 알림·자료실 > 알림방 > 공지사항 ... 제목 '화면 정보게시 매뉴얼' 검색

2026. 4.

국민건강보험공단